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52
----------	-------

발의연월일 : 2023. 11. 21.

발 의 자 : 노웅래 · 임호선 · 양기대
민형배 · 김민석 · 임종성
황운하 · 이동주 · 김승남
서영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무인정보단말기의 경우 장애인·고령자 등이 신체·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음성 안내 등의 조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가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음성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

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2 신설).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방법 및 결제정보 등에 대한 음성 안내
2.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성·문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6조의2(무인정보단말기의 접근 및 이용 보장) 지능정보서비스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이용자의 조작에 따라 서류 발급, 정보 제공, 상품 주문·결제 등의 사항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u> <u>1. 무인정보단말기의 이용방법 및 결제정보 등에 대한 음성 안내</u> <u>2. 무인정보단말기의 오류 발생 등 이용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음성·문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u>